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5 선고 2022가단1080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김동길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0. 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0,408,111원과 그 중 50,126,971원에 대하여 2021. 12. 2.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9%의, 2022. 1. 1.부터 2022. 5. 16.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1. 7. 2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21. 7. 22. 접수 제118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20. 6. 24. 보증금액을 5,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22. 6. 23.로 정하여 원고는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되, 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 A이 원고에게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체당금,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C은행 금산군지부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은 2021. 7. 24. 위 C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2. 2. 위 C은행에 50,126,971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 집행하기 위한 가집급금 281,140원을 지출하여 피고 A에 대하여 합계 50,408,111원(= 대위변제금 50,126,971원 + 체당금채권 281,140원)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3) 한편, 피고 A은 위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21. 7. 22.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D 앞으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충남 금산군 E 대 688㎡ 중 688분의 496지분만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합계 4억 1,7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산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점, 신용보증사고 발생일 불과 이틀 전에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 당시에는 이미 피고 A에게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피고 A이 특정 채권자인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도 피고 A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받고 채무 500만 원을 감액해준 것에 불과하여 선의의 수익자라는 내용으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사정 등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 B도 피고 A의 재정상태나 무자력인 상황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3) 그렇다면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수익자인 피고 B은 채무자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재원

별 지 목 록

1. 충청남도 금산군 , 임야 760㎡

1. 충청남도 금산군 , 도로 57㎡
- 이 상 -

